

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·정신질환 조기 발견
- 사업기간 : '25. 1. 1. ~ 12. 31. (예산 소진 시까지)

□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: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
- 지원내용 :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(1회당 최소 50분이상, 1:1대면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(서비스 이용권) 제공
- 신청방법

지원대상

<p>대상 1</p> <p>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
<p>대상 2</p> <p>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
<p>대상 3</p> <p>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</p>
<p>대상 4</p> <p>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</p>
<p>대상 5</p> <p>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을 통해 의뢰된 자 <small>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('22~, 부산 등)</small></p>

신청방법

<p>대상자별 증빙서류</p> <p>대상 1</p> <p>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 (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) 등) -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<p>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</p>
<p>대상 2</p> <p>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</p>
<p>대상 3</p> <p>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</p>
<p>대상 4</p> <p>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/가정위탁보호 확인서</p>
<p>대상 5</p> <p>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</p>

(신청자격)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

(신청장소)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(<https://www.bokjiro.go.kr>)

- 서비스 유형 :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
- ※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

구분	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
1급 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국가전문자격)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민간자격)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 상담심리사 1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
2급 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국가전문자격)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국가기술자격) 임상심리사 1급 ○ (민간자격)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

○ 서비스 가격

(서비스 단가) **1회당 1급 유형 8만원, 2급 유형 7만원**

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부담
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부담률 0%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부담률 30%

※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
<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(1회당) >

구분	1급 유형			2급 유형			
	정부 지원금	본인 부담금	합계	정부 지원금	본인 부담금	합계	
기준 중위 소득	70% 이하	80,000원	-	80,000원	70,000원	-	70,000원
	70% 초과~120% 이하	72,000원	8,000원	80,000원	63,000원	7,000원	70,000원
	120% 초과~180% 이하	64,000원	16,000원	80,000원	56,000원	14,000원	70,000원
	180% 초과	56,000원	24,000원	80,000원	49,000원	21,000원	70,000원

<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(총 8회) >

구분		1급 유형			2급 유형		
		정부 지원금	본인 부담금	합계	정부 지원금	본인 부담금	합계
기준 중위 소득	70% 이하	640,000원	-	640,000원	560,000원	-	560,000원
	70% 초과~120% 이하	576,000원	64,000원	640,000원	504,000원	56,000원	560,000원
	120% 초과~180% 이하	512,000원	128,000원	640,000원	448,000원	112,000원	560,000원
	180% 초과	448,000원	192,000원	640,000원	392,000원	168,000원	560,000원

□ 서비스 제공 절차



- **비용결제** :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(바우처 카드)로 결제
※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(계좌입금, 카드, 현금납부)

□ **유의사항**

- 서비스 신청은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
-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유형(1급/2급) 변경 불가
- 바우처 초과 비용 본인 부담, 바우처 카드 타인에게 양도 불가
- 서비스 지원기간 (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) 까지만 서비스 이용 가능, 기한 만료 시 서비스 자동 종료

□ **문의처**

- 장흥군보건소 질병관리과 정신보건팀 ☎ 061-860-6462